#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강승규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63 발의연월일: 2024. 6. 5.

발 의 자: 강승규·조 국·김대식

강대식 · 정희용 · 백종헌

권영세 • 박성민 • 박대출

김장겸 의원 (10인)

#### 제안이유

학령인구 감소 및 수도권 인구 집중이 지속되면서 지역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신입생 미충원이 지방대에 집중되고 있음. 따라서,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지방주도 균형발전 전략에 따라 지역주도로 지역·대학의 동반성장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실질적 권한 부여가 필요한 시점임.

이에 지역 주도의 지역인재양성 추진과 지역대학 혁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현행법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시·도지사는 지역별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시·도 기본계획과 시·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교육부장관은 이를 지원하기 위 하여 지원전략을 수립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학지원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 다.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인재의 양성을 위하여 대학의 혁신을 선도하고, 주변 대학에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글로컬대학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대학 전반의 혁신을 유도하도록 함(안 제21조).
- 라. 교육부장관은 지역의 혁신 생태계 구축과 대학 혁신을 위해 반드 시 필요한 대학 관련 규제에 대한 특례를 제공하는 제도를 운영함 (안 제22조 및 제23조).
- 마.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발전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역고등교육위원회를 설치함(안 제24조).
- 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학지원협약에 근거하여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전담하는 지역별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25조).
- 사. 교육부장관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활성화를 위한 연구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26조).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의 육성 지원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 2. "지방대학"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을 말한다.
- 3. "지역균형인재"(이하 "지역인재"라 한다)란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말한다.

- 4.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동 반성장을 목적으로 대학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 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을 행정 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말한다.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지역혁신체계와 연계하여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야 한다.
  - ② 국가와 수도권이 아닌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 1.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 지원을 위한 종합적 시책 수립ㆍ시행
  - 2. 지역인재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지원 대책 수립ㆍ시행
  - 3. 지역인재 취업이 촉진되는 사회적·경제적 환경 마련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④ 공공기관과 기업은 지역인재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와 지 방자치단체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사항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2장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등을 위한 시·도 기본계획 등

- 제5조(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등을 위한 시·도 기본계획의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발전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을 위하여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등을 위한 시·도 기본계획(이하 "시·도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시·도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수도권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시·도 기본계획에는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 1.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을 위한 지역발전전략과 연계 사항
  - 2.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을 위한 시·도의 추진목표, 기본 방향 및 중·장기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 3.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 지원을 위한 시·도의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 4.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시·도의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 5.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 지원을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시·도 및 지역 내 관계 기관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 6. 지역인재에 대한 채용촉진 및 지역정주에 관한 사항
- 7.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8. 지역의 산업·사회를 연계하여 교육·연구 경쟁력을 갖춘 글로컬 대학의 육성에 관한 사항
- 9. 외국인 유학생 유치·학업·취업·정주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10. 그 밖에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2 개 이상 시·도를 통합하여 시·도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④ 시·도지사가 시·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대학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제24조에 따른 지역고등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수립 또는 변경한 시·도 기본계획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⑥ 시·도지사는 시·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시·도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① 교육부장관은 시·도 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시·도 기본계획의 상호 조정이 필요할 경우 제9조에 따른 대학 ·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시·도지사에게 시·도 기본계획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연도별 시·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도지사는 시·도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연도별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육성지원 등을 위한 시·도 시행계획(이하 "시·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 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가 시·도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24조에 따른 지역고등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③ 시·도지사는 전년도 시·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및 해당 연도 시·도 시행계획을 매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그 추진실적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 제7조(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전략의 수립) ① 교육부장관은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도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위한 지원전략(이하 "지원전략"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지원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 2.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 운영에 관한 사항
- 3. 제21조제1항에 따른 글로컬대학의 지정에 관한 사항
- 4. 지원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확보 및 연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
- 5. 시·도 기본계획 및 시·도 시행계획의 추진을 위한 행정적·재 정적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 6.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을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학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과 지역 혁신중심 대학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교육부장관이 지원전략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제9조에 따른 대 학·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④ 교육부장관은 지원전략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계획이나 자료의 제공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단체의 장은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전략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5조에 따른 시·도 기본계획, 제6조에 따른 시·도 시행계획 및 제7조에 따른 지원전략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시·도 지방시대 계획 및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인적자원 개발·지원 계획과 연계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 제3장 대학 · 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

- 제9조(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지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제5조제7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간 시·도 기본계획의 상호 조 정에 관한 사항
  - 2.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전략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 3.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지역인재의 채용실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4.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와 관련된 정책의 분석 · 평가에 관한 사항
  - 5.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 지원 사업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 6. 제20조에 따른 대학지원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 7. 제21조에 따른 글로컬대학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 8.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규제특례의 적용・변경 또는 취소에 관

한 사항

- 9. 제24조에 따른 지역고등교육위원회의 장 또는 대학등의 장이 요청하여 지역의 고등교육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사항
- 10. 그 밖에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③ 지원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위원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10조(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 기획재정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법무부차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위원장이 위촉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
  - 3.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 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 ③ 지원위원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지 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 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관련 기관·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장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 등

- 제11조(교원의 참여 확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위원회별로 지방 대학 교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 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12조(해외교류·연수의 기회균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수도권이 아닌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학생의 해외교류·연수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지방대학 학생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 학생의 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해외교류 및 연수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3조(지역인재의 공무원 임용기회 확대) ① 국가는 신규 임용하는 국가공무원 중 지역인재가 일정비율 이상 확보될 수 있도록 시행계획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신규 임용하는 지방공무원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지역인재가 일정비율 이상 확보될 수 있도록 시행계획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역인재를 선발하는 경우 그 적용대상 시험, 선발비율, 선발방법 등은 「국가공무원법」 제6조에 따른 중 앙인사관장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 및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 및 그 결과 등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4조(공공기관 등의 채용 확대 등)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의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이하 이 조에서 "기업"이라 한다)은 신규 채용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9조제2항제2호에 관한 지원위원회의 심의 결과 지역인재의 채용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하 여 그 채용실적을 공개하고,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하여 줄 것을 요 청할 수 있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1. 지역인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 채용하는 경우
  - 2.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특별 채용제도를 개발·시행하는 경 우
  - 3. 지역인재의 현장실습 및 인턴채용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 제15조(대학 등의 지역인재 우대 채용) 대학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은 소속 교수 또는 연구원 등을 채용하는 경우 지역인재를 우대하여 채용할 수 있다.
- 제16조(대학의 입학기회 확대) ① 지방대학의 장은 「고등교육법」 제34조에 따른 특별전형으로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선발할 수 있다.
  - ② 지방대학의 장은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및 간호대학 등의 입학자 중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 의 수가 학생 입학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지방대학의 장은 해당 지역의 시·군·구 간 균형있는 선발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1.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한 중학교를 졸업할 것
  - 2. 해당 지방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할 것(졸업예정 자를 포함한다)
  -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학교의 재학기간 내에 해당 학교가 소재 한 지역에 거주할 것
  - ③ 지방대학의 장은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법학전문 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및 한의학전문대학원 입

학자 중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수가 학생 입학 전 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지방대학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 (법학전문대학원은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선발하여야 한다.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4. 그 밖에 저소득층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선발 실적이 우수한 지방대학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⑥ 해당 지역의 범위, 비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 제17조(국가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의 교육·연구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교원 및 교육용·연구용 시설·설비의 확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의 학술 또는 학문 연구와 교육 연구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실험실습비·연구조성비·장학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인재의 해당 지역 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④ 국가는 지원전략의 수립과 제20조에 따른 대학지원협약 체결 시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지방대학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제18조(지방대학의 책무) ① 지방대학은 지역발전에 필요한 우수인재의 양성을 위하여 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지방대학은 우수하고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학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학·복지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지방대학은 지역인재의 취업 확대를 위하여 산업체 및 연구기관 등과의 산·학·연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지방대학은 지역주민들에게 평생학습의 장을 제공하고 평생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 제19조(정책 등의 지역인재 고용영향평가 실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정책의 수립·시행 또는 법령의 제정·개정 시 해당 정책 또는 법령이 지역인재의 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지역인재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책 또는 법령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지역인재 고용영향평가에 관한 평가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출받은 평가서에 관한 검토의견을 해당 중 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역 인재 고용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 또는 법령에 반영한 경우 그 결 과를 교육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그 밖에 지역인재 고용영향평가의 대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장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 제20조(대학지원협약의 체결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내용 및 투자 분담 등이 포함된 대학지원협약(이하 "대학지원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 ② 대학지원협약을 체결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4조에 따른 지역고등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대학지원협약안 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교육부장관은 대학지원협약을 체결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대학지원협약안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학지원협약에 따라 대학의 지역혁신역 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⑤ 그 밖에 대학지원협약의 사업범위, 내용 및 체결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1조(글로컬대학의 지정 등) ① 교육부장관은 지역의 산업·사회와 연계하여 교육·연구 경쟁력을 갖추고 지역혁신을 선도하는 대학을 육성하기 위하여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방대학을 글로컬대학(이하 "글로컬대학"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글로컬대학이 지역혁신을 선도하는 경우 이를 육성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 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교육부장관은 글로컬대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해당 지방대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1.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경우
  - 3. 지원받은 자금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④ 글로컬대학의 지정이 취소된 대학의 장은 교육부장관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글로컬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에 대해서는

제22조에 따른 규제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 ⑥ 글로컬대학의 지정 및 취소, 이의신청의 기준·절차와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2조(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을 위한 규제특례) ① 대학지원협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글로컬대학의 장은 교육부장관에게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및 대학등의 혁신에 필요한 규제특례(이하 "규제특례"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학지원협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 제24조에 따른 지역고등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과 협의 후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제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협의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30일 이내에 회신하지 아니할 경우 소관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 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④ 교육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글로컬대학이 신청한 규제특례에 대하여 법령 정비가 필요하지 아니한 신청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처리하여야 하고, 규제특례 기간 종료전이라도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즉시 법

- 령 정비에 착수하여야 한다.
- ⑤ 그 밖에 규제특례의 신청 및 적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3조(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을 위한 규제특례의 변경·취소 등) ① 제21조에 따른 규제특례 적용기간은 4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에 한 정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② 교육부장관은 제22조제1항에 따른 규제특례를 신청한 자의 요청에 따라 규제특례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2조제2항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③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 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규제특례를 신청한 자의 요청에 따라 규제특례의 적용을 취소할 수 있다.
  - 1. 규제특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 2. 규제특례가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는 경우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규제특례의 적용을 취소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 다.
  - ⑤ 그 밖에 규제특례의 연장 · 변경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4조(지역고등교육위원회) ①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발전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에 관한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 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방자치단체, 대학 등, 지방교육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기업의 장 등으로 구성된 지역 고등교육위원회(이하 "지역고등교육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시·도 기본계획 및 시·도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및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 2. 제20조제2항에 따른 대학지원협약안에 대한 심의 및 대학지원협약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 3. 제25조에 따른 지역별 전담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 4.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대학지원협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하는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 5. 지역 내 산업과 대학 간 산학협력 촉진을 위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 6. 대학의 평생교육 기능 강화에 관한 사항
  - 7. 대학과 초·중등학교 간 협력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8. 유학생 유치 등과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9. 지역 대학생들에 대한 정주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 10. 지역 대학생들에 대한 취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11. 그 밖에 지역고등교육위원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지역고등교육위원회는 해당 지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대학등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 ③ 지역고등교육위원회의 위원은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위한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 ④ 지역고등교육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 고등교육위원회에 실무조직과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⑤ 그 밖에 지역고등교육위원회 및 제4항에 따른 실무조직과 전문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 제25조(지역별 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 사업과 대학등과의 협업체계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역별 전담기관(이하 "지역별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역고 등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별 전담기관이 제1항에 따른 업무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③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별 전담기관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에 관한 업무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범위 내에서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별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이 어려워 교육부장관이 전담기관 지정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 3. 제6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4. 그 밖에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로 지역별 전담기관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⑥ 그 밖에 지역별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절차, 운영 및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
- 제26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교육부장관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체계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성과관리·데이터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종합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이하 "전 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교육부장관은 전문기관이 제1항에 따른 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③ 교육부장관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 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3. 그 밖에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로 전문기관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 기 어렵게 된 경우
- ④ 교육부 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⑤ 그 밖에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절차, 운영 및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장 보칙

- 제27조(업무의 위탁)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2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및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1.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위원회
  - 2. 제9조제3항에 따른 전문위원회
  - 3.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역고등교육위원회
  - 4. 제24조제4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

- 5.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지역별 전담기 관
- 6. 제26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
- 7. 제27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업무의 일부를 위탁한 기관 또는 단체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 성지원 기본계획은 제7조에 따라 지원전략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이 법에 따른 지원전략으로 본다.

제3조(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행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연도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지원 시행계획은 제6조에 따른 시·도 시행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이 법에 따른 시행계획으로 본다. 다만, 제6조제3항에 따른 전년도 시행계획, 해당 연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할 때에는 이 법이 시행되는 연도 및 그 다음 연도까지는 종전의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

전의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에서 수립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폐지한다.

제5조(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규제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지정관리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으로 보며, 종전의 규정에 따른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규제특례 적용사항은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것으로 보며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용된 규제특례기간을 적용한다.

제6조(전담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담기관은 이 법에 따라 지역별 전담기관이 지정되기 전까지는 이 법에 따른 지역별 전담기관으로 본다.

제7조(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협의회와 지역협업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협의회와 지역협업위원회는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라 지역고등교육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이 법에 따른 지역고등교육위원회로 본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협의회 및지역협업위원회 중 어느 하나를 지역고등교육위원회로 볼 수 있다.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협의회및 지역협업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은 지역고등교육위원회가 심의한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0항 중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방대학(이하 "지방대학"이라 한다)에 대하여 같은 법 제16조"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지방대학(이하 "지방대학"이라 한다)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